

연구논문

## 무형문화재의 전승원리와 전통방식 해석에 따른 전승구도 변화와 대응: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중심으로\*

염미경\*\*

이 논문은 1962년 제정되어 최근까지 문화재에 적용된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 이 전승원리가 무형문화재에 적용되면서 전승구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제도라는 구조적 여건 하에서 전승집단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지정해제와 2011년 재지정을 반복해 온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데는 전통방식대로 보존해 전승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적용되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전승집단들이 특정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가는 과정, 이에 따른 전승구도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최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시기와 2011년 재지정 된 시기에 전승주도집단이 시도한 대응전략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자료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수집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포함한 옛 옹기장인들과 전수생집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담당국과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 관계자 등 전문가집단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와 그 외 현지관찰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먼저 두 시기에 모두 전통제작방식대로 보존한다는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 전승집단이 선택한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은 달랐는데, 이것은 전승주도집단이 처한 현실 정의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고 그것은 다시 제주도 옹기장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 범위 등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구조적 여건에 대한 전승집단의 정의와 그에 대한 대응전략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에서의 특징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전승체계 내 전수생들 작업장의 대표를 정점으로 해 기능보유자와 그 외 전수생들이 위계화 되어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960, 70년대 옹기생산자들이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경제에 편입되면서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장인들이 수익성이 낮은 환금작물경제 분야로 전업하였고, 이에 따라 옹기생산 자체가 중단되게 된 현실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하에서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에도 이들 전승주도집단의 현실적 위치와 목표 및 이해관계와 대응방식에 따라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무형문화재, '원형', '제주도 옹기장', 제주옹기, 전승구도, 제주

\* 이 논문은 2017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수정, 보완에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mgyeum@jejunu.ac.kr).

## I. 서론

2015년 3월 27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sup>1)</sup>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무형문화재 법·제도의 전문화와 구체화를 시도하여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와 동일하게 우리 무형유산의 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1962년 제정되어 지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우리의 무형문화재제도는 현재 변화 국면에 있다.

그러면 1962년 제정되어 최근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에 적용된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가진 특징은 무엇이며, 이 전승원리가 무형문화재에 적용되면서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구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러한 구조적 여건 하에서 전승집단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전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이 논문에서는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명맥이 거의 끊긴 상태거나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전통방식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경합할 수 있다. 이때 무형문화재 전승행위자들의 선택범위를 문화재법의 전승원리가 기본적으로 구속한다 할지라도 전승행위자들이 하는 현실 정의와 그것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응방식은 이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화는 주어진 것이거나 어떤 실체가 있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재규정되고 재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oseberry, 1989; Ortner, 1984). 따라서 특정 종목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보존되는 형태와 방식은 처음 지정 당시의 체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제도라는 구조적 여건 하에서도 해당 문화재

1) ‘무형문화재법’ 제정 전에는 ‘문화재보호법’ 내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조항들이 포함되었으나 이 법이 별도 시행되게 된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라는 기존 명칭도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으며, 동법 제6장에는 국가 무형문화재와 동일하게 시·도 무형문화재도 우리 무형유산의 중요한 축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지정 주체에서 차이가 있고,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를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 그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거의 없다. 전승주체와 전승역량에서도 국가 지정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간에 큰 차이는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태도(2015), 김윤지(2016), 홍태한·김태호(2017)를 참조 바람.

의 전승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대응방식과 전략 그리고 전승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행위자들의 전략의 중요성을 의미한다(Ferman, 1996: 3). 따라서 특정 현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자 할 때, 그를 둘러싼 행위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시기별 대응전략과 이들 간 관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은진, 2000: 69).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특정 무형문화재가 처한 상황과 현실적 여건 속에서 행위자들이 특정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행위자들의 대응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은 지방무형문화재에 주목하는데, 이는 1990년대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전적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sup>2)</sup> 특정 종목의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나타난 전승집단들 간에 관계 재편 및 전승구도 변화과정과 양상을 잘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제주도 옹기장 사례에 주목하는데, 옹기의 문화적 가치와 의의는 이미 1990년 옹기장이 국가무형문화재<sup>3)</sup>로 지정되면서 인정받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옹기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자기 지역의 옹기문화를 보호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이다. 제주도 옹기장은 2001년 ‘제주도 허벅장’ 명칭으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정해제와 재지정을 받은 사례이다.

그런데 처음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와 재지정된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전통방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기능보유자 인정범위와 대상이 변화된 경우이다. 즉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명칭으로 지정되어 기능보유자 1인을 인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로서 전승체계를 갖추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당국 공무원의 무형문화재 전승·시연 지원금 비리문제로 2008년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해제되었다가 2011년 제주도 옹기장 명칭으로 재지정 받았다. 두 시기에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함께 적용되었음에도, 전승주도집단이 선택한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은 달랐고 이것은 전승집단 범위와 전략 선택에서 차이를

2) 이와 관련해, 손태도(2015)는 1990년대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이 전적으로 지방 시·도 차체 내에서 이루어져, 17개 시·도에서 2004~2014년 10년 동안에 211개 종목(가예능)이 지정되는 등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중요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1990년 5월 8일 옹기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되었고 초대 보유자로 이종각(1993년 사망), 이옥동(1994년 사망), 이내원(2000년 사망)이 인정되어 현재는 경기도 오부자옹기 김일만과 전남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의 정운석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있다(이채원, 2011: 5).

가져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기능보유자 인정 대상과 범위 등 전승체계까지 변화시켰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2001년 옹기장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시기와 2011년 재지정된 두 시기에 전승주도집단이 전통적인 옹기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을 달리 선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두 시기 전승주도집단의 대응전략과 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전승집단이 처한 현실 정의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 선택이 전승집단 범위와 구도의 변화 및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 인정 범위 등 전승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 II.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 1. 논의의 배경과 연구쟁점

옹기는 수제방식의 제작이 주가 되는 전통산업에 속한다. 우리의 전통산업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고, 그 존재양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가내수공업 내지 농촌의 부업형태로 정체되어 생산공정이 기계화되지 않은 형태로 삼베나 모시생산이 대표적이고, 두 번째는 근대화되면서 생산수단이 근대화와 동력화를 이루어 농업에서 분리되어 전문화하고 공장제 공업의 단계로 이행했으나 여전히 가족노동이 주가 되는 영세 중소기업에 머무르는 형태로 유기와 목기 및 죽제품 생산이 이에 속하며, 세 번째는 제2유형과 마찬가지로 근대화되면서 생산과정이 기계화되고 근대적 중소기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자기나 주류 생산에 이에 속한다(조승현, 2004: 11-12; 염미경, 2011: 267). 제주옹기는 첫 번째 형태로 존재하다가 1960, 70년대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경제가 확대되고<sup>4)</sup> 이들 분야가 옹기생산에서 얻는 수익보다 크면서 옹기생산에 종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전업하였고 그로 인해 옹기생산은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이에 반해, 다른 지역 옹기들은 나름대로 근대형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북지역 옹기는 쇠퇴국면에 들어선 1970년대부터 옹기 흙을 가는 기계를

4) 제주지역에서 환금작물경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제주농민의 생활과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창민(1995)을 참조바람.

도입하여 용기제작에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함으로써 근대형 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어 현대사회의 속성에 맞게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배영동, 2014: 33). 다른 한편, 울산 외고산 용기마을과 같이 일찍부터 수제전통을 공장제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해 근대형 산업으로 변화된 경우도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용기제조업이 크게 퇴조하자 용기장인들을 중심으로 해 용기협회를 결성하고 용기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탈근대형 문화산업을 지향해간 경우이며,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용기제작에서 문화산업화가 시도되었다.<sup>5)</sup> 현재 외고산 용기마을 장인들은 용기제작을 개별적인 생산체계를 갖춰 기계화된 방식을 하는 경우와 전통방식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이채원, 2011: 14; 윤남윤, 2011; 배영동, 2014). 경기도 오부자용기의 경우는 제주용기와 마찬가지로 전통수제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과거 전통수제방식으로 용기흙을 정제하던 것에서 기계를 이용해 하는 방식으로 기술 변화가 있었다(이한승, 2015).

이처럼 용기는 전국적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쇠퇴해 갔으나 지역에 따라, 행위주체들의 대응방식에 따라 쇠퇴속도와 명맥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유사한 국면에 처해 있는 각 지역 용기의 존재양상이 그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1990년 용기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용기장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했는데, 그 지정방식이나 기능보유자 인정범위와 전승방식이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용기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대응방식과 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용기장 기능의 보존과 전승방식과 관련하여, 경기도 오부자용기 사례에 대해서는 이한승의 연구(2015), 외고산용기협회 사례에 대해서는 윤남윤(2011), 이채원(2011), 배영동(2015)의 연구, 경북지역 용기 사례에 대해서는 이창언(2009) 등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연관된 제주용기 관련 연구로는 염미경의 연구(2011; 2016)가 있는데, 염미경(2011)은 1990년대 이후 제주용기 복원 움직임과 2001년 제주용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야기된 전승주도권을 둘러싼 전승집단들 간의 이해갈등 양상과 분화과정을 다루었고, 염미경(2016)은 제주용기 전승체계의 상세 내용과 특징 및 제주용기를 지역축제의 자원으로 승화시켜 제주용기가 지역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영동(2014)을 참조바람.

이상의 연구들은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연구문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관련 법·제도를 외부 상황적 조건으로 간주해 접근하거나 법·제도 그 자체의 문제만을 다룸으로써 주요 행위자들이 문화재보호 관련 법·제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였다.

제주에서 전통옹기생산이 중단된 배경으로는 근대적 사유재산권이 강화되면서 벌목 금지로 인해 땀감 조달이 어려워졌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들 수 있다(1대 옹기장인 박씨와의 심층면접 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6일자). 제주지역 옹기생산지들에서 옹기생산이 일시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중단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정읍의 대표적인 옹기생산지들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옹기생산이 중단되었으나, 한경면 조수리에서는 1970년대 경남 창원의 남창지역 옹기장인들과 가마축조 기술자들이 제주에 들어와 남창 방식의 가마를 축조해 남창식 계란형 옹기를 생산하고 폐유를 사용하는 기름 가마로 바꾸고 옹기생산을 농업에서 분리해 전문화된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sup>6)</sup>은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 거주 옹기장인들도 지역에서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 재배가 일반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환금작물 분야로 전업하면서 제주 전 지역에서 전통옹기생산은 거의 끝나게 된다(염미경, 2016).

이는 제주옹기생산 자체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한데, 제주옹기생산은 자가수요를 위해 가족노동을 활용하는 가내수공업 형태를 띠었고 농가 부업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생계경제를 유지해 오던 옹기생산지들은 1970년대 전후해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경제 속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옹기생산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환금작물 분야로 전업하게 된다. 이처럼 옹기생산에 종사했던 장인들이 전업하면서 제주에서 전통옹기생산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중단되었다. 더욱이 옛 옹기장인들의 생업현장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상황에서 이들을 규합해 제주 전통가마와 옹기제작기술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전통가마 축조와 옹기제작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연로하여, 1990년대 제주옹기 보존과 전승활동은 전통가마 복원과 옹기제작기술 전승에 초점이 두

6) 옹기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의 옹기제작 방식은 옹기장 무형문화재 지정을 옹기성형을 하는 도공에 대해서만 하던 것에서 공정별로 다수의 기능보유자를 지정하게끔 만든다. 기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전수장학생으로 이루어진 전승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6)을 참조바람.

어지게 된다(염미경, 2011).

한편, 특정 종목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보존되는 형태와 방식은 변화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맥락에서 축적된 제도와 이를 통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적 특성과 대응방식과 전략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용하, 2017: 340-344; 하연섭, 2002). 이러한 제도와 행위 간의 관계는 조직연구의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제도 등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와 조직이 환경에 대해 순응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적 선택론이 대표적이다(이홍, 2013: 222-223; Miles and Snow, 1978; Porter, 1980). 기본적으로 전자는 외부 상황적 제약조건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행위자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그 결과로서의 다양한 선택을 강조한다(Reed, 1988; Whitley, 1988).<sup>7)</sup> 이 논문은 상황이나 환경 그 자체보다는 제도 및 환경적 조건들과 더불어 행위당사자들의 전략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전략적 선택론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행위자들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같은 제도적 조건하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황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관련 행위자들 간에 서로 엇갈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대립하고 연대하며,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문제는 행위자들의 전략과 이들 간 힘의 관계와 관련된다(염미경, 2001: 176-179; Castells, 1977). 따라서 이 논문은 제도 및 제도 변화와 주요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되, 문화재 관련 법·제도와 전승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제주옹기 전승·보존체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같은 법·제도 하에서 시기별, 집단별 전승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만약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법·제도라는 환경 자체보다는 제도적 제약하에서 전승행위자들이 하는 전략적 선택<sup>8)</sup>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7) 초기 제도주의 입장을 넘어서 개인 행위를 제약하는 거시적 변수로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제도의 영향을 강조하긴 하지만 확정적이고 고정된 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 맥락에서 축적된 제도와 이를 통한 행위주체들 간의 관계적 특성을 포괄하려는 신제도주의 입장이 있다. 신제도주의의 한 갈래인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자들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동일한 제도적 제약조건 하에서도 다양한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도주의와 전략적 선택론 그리고 신제도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열(1996: 75-106), 하연섭(2002), 이홍(2013), 정용하(2017) 등의 연구를 참조바람.

8) 전략은 환경, 기술, 규모 등 환경 요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행위자들의 선택과 의도를 반영한 개념이며, 대안에 대한 합리적 고려로 의사결정을 위한 일관된 근거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Child, 1985: 1). 전략적 선택 개념은 조직구조는 환경, 규모, 기술 상황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는 행위자

이러한 기본 문제의식과 관련해, 이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및 전승방식과 형태 등의 전승구도는 문화재제도나 정책과 같은 구조적 조건 자체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해당 시기 문화재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해석, 이해와 목표, 그리고 그를 위한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문제의식도 견지한다.

이상의 기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논문의 연구쟁점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보호정책 자체의 문제이다. 최근 ‘무형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어 보완이 되었지만 무형문화재 전승은 종전처럼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즉, 1970년 신설된 한국의 보유자 인정기준에는 ‘지정된 주요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으려면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sup>9)</sup> 즉, 무형문화재에 있어서 그 문화유산의 근원을 지칭하는 범주적인 ‘원형(原形, archetype)’으로부터 파생된 한 형태, 즉 무형문화재 종목의 한 시대적 형태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원형(原形, original form)’ 보존 원칙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의 기본 원칙이 되어왔다. 논리적으로 원래 하나의 체계로 정립된 문화현상이 세대를 거쳐 가면서 변화나 변형을 보이기 이전의 단계가 원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그 기원으로부터 변화되어 온 것으로 그 행위의 실현과정 중에서도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송준, 2008: 222, 225). 내부적 역동성에 의해 변화해가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재의 한 형태를 원형으로 지정하고 그것의 반복 수련을 통한 고형화(固化)를 강제하는 원형보존주의 원칙에 입각한 무형문화재 행정은 그 적용과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송준, 2008; 이채원, 2011; 정수진, 2012).<sup>10)</sup>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보존주의 원칙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차일드(Child, 1972)의 주장에서 출발한다.

9) ‘원형대로’라는 한국의 보유자 인정 기준과 ‘고도로’와 ‘정통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일본의 보유자 인정 기준이 비교되곤 하였다(정수진, 2012). 한국의 무형문화재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재필(2011)을 참조바람.

10) 이에 반해 ‘어떤 부류의 본질적 특색을 나타내는 틀’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는 ‘전형(典型, typifier)’은 특정 시기의 한 형태만을 규정하는 원형 개념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인 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변화의 속성인 내발적 역동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생성기반이 되었던 원형을 지역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그 구성과 행위원리와 함께 고려함으로써 문화의 연속성과 발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송준, 2008; 정수진, 2012). 우리나라도 2016년 3월부터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서 ‘전형’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정책의 실제적 적용 기준이 되어 왔는데, 무형문화재가 그 기원으로부터 변화해 온 과정과 환경이 무시됨으로써 그 전승과 보존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특정 기·예능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가 형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다원화된 보호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이재필, 2011: 18-19). 그런데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누가 원형에 가까운지를 평가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왔던 논란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기능을 가진 여러 명의 보유자가 존재할 때 누구를 보유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평가해야 하는 상대적인 기준의 문제와 누가 그것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와 관련해 2016년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문화재보호법이 원형 유지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전통제작방식을 체득한 옛 옹기장인들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동원해 내는 전수자집단인지 여부가 전승주도권을 갖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즉 2016년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전형’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그 이전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처음 생겨난 시점의 원형 개념을 적용해 그 변화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옹기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종전의 원형 개념 하에서 초창기 제주옹기 보존과 전승활동에 참여했으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제주옹기 보존과 전승구도에서 주변화 되어 제주옹기 연구와 작품활동 및 학술교류활동을 해오던 학계와 연구자들 중심의 ‘제주옹기문화연구회’가 최근 시행된 ‘무형문화재법’ 하에서 조직 재정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옹기의 보존과 전승활동을 전개한 단체나 조직들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통옹기제작이 일반적인 방식인 1인 장인체제가 지배적이었는지, 아니면 협업을 바탕으로 한 공동작업이 지배적이었는지의 문제이다.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는 전자가, 2011년 재지정될 때는 후자가 채택되었다. 이 두 개의 해석 중 어느 것이 선택되는가에 따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무형문화재의 원형 중심의 전승원리가 지배한 종전의 문화재법상에서 보면 전승주도권 갈등에서 보다 많은 원형을 체득한 옛 옹기장인들을 보다 많이 동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08년 무형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된 후 2011년 재지정을 위해 노력한 전승주도집단은 옛 옹기장인

들과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들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찰시키는 데 있어서 연대와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전통옹기제작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이었다는 해석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주옹기를 무형문화재로 재지정하게 된다. 즉 제주옹기 제작방식이 협업을 바탕으로 한 공동작업이었다는 해석은 제주옹기 전수자집단의 규모를 키웠으며 이것은 결국 제주옹기의 전승구도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면서, 두 개의 해석 선택에 따른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을 둘러싼 이해갈등 지형과 전승구도 변화에 주목하여 제주옹기의 보존과 전승을 둘러싼 전수자집단의 이해갈등 양상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사례는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주옹기로, 첫 지정 당시에는 1인 기능보유자 체제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에는 협업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위원회에 받아들여져 다수 기능보유자 전승체제로 바뀐 경우이다. 제주옹기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분위기를 배경으로 복원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는데, 제주옹기의 보존과 전승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둘러싼 기능보유자들과 전수자집단들의 대응 양상은 어떠한가?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주옹기가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공무원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로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와 옛 옹기장인들 및 이들을 관리한 전수자집단 간 혹은 전수자집단 내부 그리고 옹기생산 마을의 관계는 어떠한가? 재지정 후 이들 간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해당사자 집단들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사례이다. 옹기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류재만, 2010: 52; 염미경, 2016: 69). 옹기 흙과 땀감이 갖춰진 곳 또는 노동력 조달이 쉽고 강이나 해안을 끼고 있어 옹기 운송이 용이한 지역이 옹기생산지가 된다. 1990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도 오부자옹기와 전남 강진의 칠량옹기,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 등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옹기생산지들이다(이영자, 2006: 36-37). 제주에서도 옹기 흙과 땀감 조달 그리고 노동력 조달이

쉬운 곳이 옹기생산지가 되었는데, 대정읍과 한경면 지역이 대표적이다(오창윤, 2013). 옹기는 원료나 옹기형태와 종류 및 제작방식 등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이 강하다.

전통적인 생계경제를 유지해 오던 제주농민의 생업이었던 제주옹기업은 1960년대 이후 제주옹기제작에 몸담았던 장인들이 환금작물 분야로 전업하면서 거의 절멸 상태에 놓여있었다. 1990년 옹기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옹기장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기 시작하였는데, 제주지역에서는 민간 전문 도예가들과 연구자들이 소멸되다시피 한 전통옹기 보존과 복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제주옹기 복원과 전승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일부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이들이 전문 도예가들과 연구자들 중심의 제주옹기 복원활동에 참여해 전통가마와 옹기제작 ‘원형’ 기술을 전문 도예가들에게 전수하면서,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요건 갖추기가 가능해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생계경제를 유지해 오던 제주의 서부지역 농민들의 생업의 일부였던 옹기생산은 1970년대 전후 옹기생산지들에서도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경제가 도입되면서 쇠퇴하게 되고 제주옹기생산에 종사했던 장인들이 환금작물경제 분야로 전업하였으며, 이후 전통옹기생산은 거의 중단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은 1990년대 제주옹기 보존과 전승 움직임이 전통가마를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 과정을 전문 도예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장을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에 옛 옹기장인들을 참여시키는 형태를 갖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제주옹기를 둘러싼 독특한 전승구도와 전승주도권을 두고 전승집단들 간 또는 전승집단 내부 행위자들 간에 상시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본 특징을 지닌 제주도 옹기장 사례는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무형문화재 전승원리가 적용되면서 전승구도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고 변화되는지, 오래 동안 단절된 상태로 있다가 전문 도예가들 주도로 복원되어 전승궤도에 진입한 제주옹기를 둘러싼 전승집단들 간 주도권 경쟁과 이들의 대응 및 무형문화재 지정과 해제 그리고 재지정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들의 선택배경, 목표와 이해에 따른 전략, 이에 따라 전승체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엔 적합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의 방향을 규정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 범위는 제주옹기 전승과 보존 움직임이 전개된 1990년대부터 2001년 제주옹기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제주도 허벅장’이라는 명칭으로 기능보유자 1인이 인정되어 전승체계가 형성된 시기, 2008년 지정 해제된 후 2011년 무형문화재로 재지정 받으면서 옹기제작 공정별 기능보유자를 인정하는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계열적 접근을 견지한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시기와 20011년 재지정 시기 등 두 시기를 비교해 살펴보는 전략을 취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자료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수집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을 비롯한 옛 옹기장인들과 전수생집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당국과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 관계자 등 전문가집단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와 그 외 현지관찰자료가 활용되었다. 특히, 심층면접자료는 2008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제주옹기업에 종사했던 도공들의 구술자료’ 수집과정에서 획득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인을 포함한 1대 옹기장인 13인과 초창기 제주옹기 전수생 1인에 대한 심층면접 및 생애사자료와 2015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 연구’에서 수집한 2011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4인과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 제주옹기의 현대화와 예술적 승화에 주력한 학계 연구자들, 전승·보존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과거 옹기 일을 한 옹기장인들과 옹기생산지 마을 관계자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인정 조사위원, 그리고 제주도 문화재행정 부서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자료와 생애사자료이다. 특히, 2015년에 수집한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의 수집은 2015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2011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4일 동안 열리는 옹기축제인 ‘제주옹기축제’에 대한 현지관찰자료가 활용되었으며, 현지관찰자료 수집과정에서 심층면접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적 면접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이들 자료는 이 논문을 위한 연구문제 설정과 전체적인 틀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sup>11)</sup>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심층면접자료 수집대상자는 부득이하게 밝혀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1) 2008년 3월부터 11월 21일까지 수집한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에 참여한 1, 2대 옹기장인들의 생애사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 2015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수집한 제주도 옹기장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을 포함한 1대 옹기장인들과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초창기 활동가 등에 대한 생애사자료와 현지관찰 과정에서 수집한 영상자료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되어 있으며, 이 모든 자료의 생산은 본 연구자가 기획하고 주관하였음을 밝혀둔다.

### Ⅲ. 무형문화재의 원형 전승원리와 제주옹기 전승구도의 재편

#### 1. 무형문화재 원형 전승원리의 적용과 제주옹기 전승구도의 재편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전승 원칙이 적용되고 제주옹기 전승방향과 방식이 무형문화재로서 제주옹기의 원형 전승에 맞춰지면서 이후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을 가질 집단의 존재가 분명해졌으며, 이에 따라 1990년대 제주옹기 복원과정에 참여한 집단들 간 관계는 재편되게 된다. 다음에서는 제주옹기에 적용된 문화재보호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제주옹기의 전승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옹기에 적용된 문화재보호제도의 특징이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는 실체가 없는 무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기능과 예능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해 그 보유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전승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따라서 문화재 전승을 위해 해당 종목의 기능과 예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를 구분해 지정한 다음, 그 기·예능 보유자가 전승교육조교로 지정된 자에게 전승교육을 하고, 그 밑에 전수장학생을 두어 일정 기간 그 분야 기·예능을 전수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승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로 무형문화재 전승이 이루어지다보니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을 둘러싸고 전승집단들 간 또는 전승집단 내부 구성원 간 그리고 전승방식과 전승지원금 등으로 인한 전승주도집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문제, 전승주도집단의 위계적, 폐쇄적 구조의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이재필, 2011: 19; 염미경, 2016: 71-72).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문화재보호법’은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2016년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무형문화재에 대해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갖고 최근까지 운영해 온 셈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기존 무형문화재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

호제도이다. 이 제도가 전승자의 확산과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내재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무화재의 문화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의 문제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 현실의 문제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이재필, 2011: 18).

옹기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001년과 재지정 받은 2011년에는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어 원형 전승원칙이 제주옹기에도 적용되었으며, 제주옹기의 원형 전승원칙은 2001년 이후 제주옹기의 전승방향과 방식을 규정해 온 구조적 조건으로서 작용하였음은 물론 1990년대부터 전개되어 온 제주옹기 복원활동에 관여해 왔던 집단들의 존재양상까지 변화시켰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부터 전개된 제주옹기 복원과 전승활동을 주도한 집단은 전문 도예가들과 관련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하여 제주옹기 전승보존노력을 해왔는데, 초기 제주옹기 복원활동은 옛 옹기장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통가마를 축조하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전문 도예가들의 작업장을 기반으로 하면서 학계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였다(‘제주옹기문화연구회’를 주도한 허씨1과의 심층면접 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12월 10일자). 따라서 1990년대 제주옹기 복원활동이 본격화된 시기에 자신의 작업장을 갖고서 전통방식의 옹기제작기술로 전통옹기를 제작하는 장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장인들은 작고했거나 고령이었고 1960, 70년대 이미 전업을 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제주지역에서 제주옹기 복원과 전승노력을 해온 대표적인 조직이 전통가마 복원을 중심으로 제주옹기 보존과 전승활동을 해오던 현장 도예가들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옛 옹기장인들이 전통가마 복원과 전통방식의 제주옹기제작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복원노력을 해오던 ‘제주도예원’과 제주옹기의 현대화와 예술적 승화에 역점을 둔 대학 기반의 도예가들과 연구자들 및 현장 기반의 연구자들까지 포함한 ‘제주옹기문화연구회’가 있었다(제주옹기문화연구회, 2011; 오창윤, 2016). 초창기에는 ‘제주도예원’ 대표도 ‘제주옹기문화연구회’에 참여하였다(‘제주옹기문화연구회’를 주도한 허씨1과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12월 10일자). 이처럼 초창기 제주옹기 전승보존 활동은 이들을 주축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망을 갖고 협력하면서 전개되었다.

이 같은 양상은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은 전통방식의 제주옹기제작 기능을 보유한 옛 옹기장인들의 작업장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 전통가마를 복원하고 전통제작방식으로 제주옹기제작기술을 전승하는 활동을 하던 ‘제주도예원’이 갖게 된다. 이후 제주옹기 복원활동에서 두 조직 간 혹은 구성원들 간 상호교류는 거의 없게 되고 한쪽은 전통방식의 옹기제작기술을 원형대로 전승하는 데, 다른 한쪽은 제주옹기의 현대화와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해가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제주옹기문화연구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 2015년 12월 8일자; 오창윤, 2016). 여기에는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원형 전승원칙이 적용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제주옹기는 1990년대 들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지역 옹기 사례들에서 나타난 전승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갖게 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이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도 오부자옹기의 경우 경기도 여주에서 수 대째 전통옹기를 빚어오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이며, 전남 강진의 칠량옹기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또한 2009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외고산옹기 사례는 기능보유자로 보유단체가 인정된 경우로 외고산옹기협회 소속 8명의 회원이 옹기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경우이다. 외고산옹기의 경우 옹기장 기능보유자 모두가 지정 당시 까지 옹기업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기능보유자가 자신의 작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작업장을 중심으로 전승활동이 이루어진다(이채원, 2011; 배영동, 2014; 윤남윤, 2011; 이한승, 2015).

이와 달리, 제주옹기는 1960, 70년대를 거치면서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장인들이 거의 전업해버린 상태였고 이로 인해 전통방식의 옹기생산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 복원과 전승활동은 전문 도예가들과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전문 도예가들과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남아있는 전통가마터를 발굴하고 전통가마를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 배경이 되었고, 전문 도예가들의 작업장은 옛 옹기장인들의 전통가마와 옹기제작기술 복원과 전승을 위한 장소 역할을 하였고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전문 도예가의 작업장이 기능보유자의 전승작업장으로 기능하면서 이 기능보유자의 전승작업장 대표가 전승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여 2011년 이후 제주옹기 전승구도는 전문 도예가들, 특히 이들의 작업장 대표가 주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후 제주옹기 전승방향과 방식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전통제작방식대로 전승해야 한다는 전승원칙이 적용되고, 제주옹기생산이 절멸하다시피 된 상황에서 자신의 작업장을 갖고 전통옹기를 계속 빚어온 장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제주옹기의 전승구도는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승작업장의 대표가 전승주도권을 갖는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전승구도에 따라 전승주도집단 내부 전수자들이나 옛 옹기장인들은 작업장 대표가 전승성과를 사유화한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것은 전승주도집단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야기해 일부가 독자적인 작업장을 만들고 옛 옹기장인들을 참여시킨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전승활동을 전개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sup>1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제주옹기 주도권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장인을 포함해 옛 옹기장인들이 전승활동을 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의 대표가 갖는 형태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전통옹기의 발전과정(윤남운, 2011; 이채원, 2011; 배영동, 2014; 이한승, 2015)과 달리 옹기제작 기능보유자들이 1970년대를 전후해 전업하면서 제주옹기는 현대화과정 없이 거의 단절되었다가 일부 도예가들에 의해 지역의 전통적인 것으로 발굴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전승체계가 형성된 경우이다. 따라서 옛 옹기장인들은 이미 작고했거나 고령인 관계로 전문가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승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2.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의 특징과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001년 이후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아니라 기능보유자가 전승활동을 하는 전문 도예가 소유의 작업장이 전승 작업장 역할을 하면서 그 작업장 대표가 전수교육조교 위치에서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을 관리하는 형태의 전승구도가 형성되었다. 실질적으로 전승주도권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그가 소유한 작업장이 갖는 것이 아닌, 기능보유자가 전승활동을 하는 작업장의 대표가 갖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부터 2008년 지정 해제<sup>13)</sup>되고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1; 2016)을 참조바람.

13)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어 기능보유자 지위까지 박탈되면서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도 지정취소되는데, 이는 2001년부터 전승활동을 주도해 왔던 작업장 대표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주옹기 전승지원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2011년 재지정되면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2011년 재지정 된 두 시기의 제주옹기 전승구도를 보면 두 시기 모두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작업장만 달라졌을 뿐 전승 작업장 대표가 제주옹기 전승활동을 총괄하고 기능보유자들을 관리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제주옹기 전승구도가 지닌 독특한 특징이며 이러한 형태는 2001년 형성된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즉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1인 기능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가 만들어질 당시 전승 작업장 대표는 기능보유자의 기능을 전승하고자 기능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장학생 3인 중 1인으로 지정되었다가 전수장학생의 교육기간 5년을 마친 2005년부터 기능보유자의 전승의 맥을 이어나가면서 전수장학생을 교육할 의무를 지니는 전수교육조교 위치에서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전반을 관장해 왔다.

이 같은 형태는 2011년 제주옹기제작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이었다는 전통제작 방식에 대한 해석을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위원회가 수용하면서 4인 기능보유자 체제를 갖게 되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 중 제주도 옹기장은 가장 많은 보유자(4인), 전수교육조교(4명), 전수장학생(6명)을 가진 무형문화재가 되었다.<sup>14)</sup> 이러한 전승체계 변화로 인해 제주옹기제작의 각 공정별 기능보유자들을 아우르고 전승 작업장 대표를 제외한 3인의 전수교육조교 모두가 고령의 옹기장인인 탓에, 전수교육조교로 있는 작업장 대표가 전승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제주옹기가 ‘제주도 허벅장’이라는 명칭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001년과 지정 해제되었다가 ‘제주도 옹기장’으로 재지정된 2011년 두 시기를 비교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01년 ‘제주도 허벅장’으로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의 전승구도에 대해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은 1990년대 이후 제주옹기 복원과 전승활동을 전개해오던 전문가집단 중에서 제주의 전통가마와 옹기 복원활동을 해온 옛 옹기장인들의 작업장 역할을 했던 ‘제주도예원’과 그 대표가 갖게 된다. 2001년 이후 독자적으로 제주옹기 복원활동을 해나가게 된 ‘제주도예원’은 그 내부에 옛 옹기장인들이 주축이 되는 ‘제주전통도예학회’를 만들어 제주 전통가마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옛

이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엄미경(2011)을 참조바람.

1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5조와 제27조 등을 참조바람.

옹기장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통옹기제작과정을 기록함으로써 기술 전승활동을 해나가고자 하였다. ‘제주전통도예학회’의 창립 전후에는 옛 옹기장인들 대부분이 참여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전승활동이 이루어졌으나 2011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옹기제작 전 과정 중 도공의 기능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작업장 대표에 대해 옛 옹기장인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는 기능보유자 1인과 그 외 옹기장인들 간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그동안의 전승활동의 성과분배와 주도권을 둘러싸고 작업장 대표와 그 외 전수생들 간 갈등이 커지면서 ‘제주전통도예학회’는 기능보유자 1인과 작업장 대표만 남게 되어 실질적으로 ‘제주도예원’은 전수교육조교 위치에 있는 작업장 대표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인의 전승 작업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2008년 이 작업장 대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승 시연 지원금 유용문제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 작업장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 해지로 대응하면서 이러한 전승체계도 일단락되게 된다. 이때까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인과 1인의 전수교육조교이자 이 작업장 대표 중심의 제주옹기 전승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1인이 제주옹기제작 전 공정을 두루 체득한 도공이었고 작업장 대표도 자체 특허를 가진 전문 도예가였다는 점이 작용하였으며,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성장잠재력이 커졌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관리와 지원이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형성된 제주옹기 전승구도는 2011년 제주옹기 제작방식의 원형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이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고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를 제작공정별로 인정하면서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작업장이 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 대표의 전승활동에서의 위상은 훨씬 커지게 된다. 다음에서는 2011년 ‘제주도 옹기장’으로 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된 시기와 그 이후 현재까지의 전승구도에 대해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후 제주옹기 전승보존 활동은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그 이전의 전승성과를 작업장 대표가 사유화하려 한다는 것을 이유로 기존 제주옹기 전승체계에 속해 있던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생들이 2000년대 후반 과거 옹기생산지들 중 하나였던 대정읍 신평리에 ‘K’라는 새로운 작업장을 만들면서 이 작업장을 중심으로 제주옹기 전승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K작업장 대표가 중심이 되어 2001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에서 제외된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전통가마를 복원하고 전통옹기 전승활동을 해나가게 되

면서 2008년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2001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에서 제외된 대다수 옛 옹기장인들이 참여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제주도예원’ 대표와 이 단체 소속 도예가들이 전수장학생으로 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예원’에 소속하지 않아도 전수장학생으로서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점도 작용하였다.<sup>15)</sup> 이는 제주옹기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울산 외고산옹기처럼 ‘보유단체’ 인정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개인을 정점으로 한 전승체계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이 전통가마를 축조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새로운 전승 작업장 역할을 하게 된 ‘K작업장’에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전통가마를 복원하는 것이었으며, 옛 옹기장인들의 지식과 기술 전수로 2009년 전통가마를 축조하는 등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와 같은 전승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한 전승·보존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데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옹기에 대한 무형문화재 재지정 움직임이 생겨났고 옛 옹기장인들의 새로운 전승 작업장과 전통방식의 제주옹기 제작 기술을 체득한 옛 옹기장인들의 조직인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제주옹기 복원을 위한 전통가마가 축조되면서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위한 기본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를 배경으로 제주옹기는 2011년 무형문화재로서 재지정 받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 전승구도에서의 특징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지역의 옹기들의 전승구도와는 달리, 전승주도권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작업장 역할을 하는 작업장과 그 대표가 전승주도권을 갖고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들에게는 자신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서 전통옹기 제작방식을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생들에게 전수하는 전수자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지만 전승활동 주도권은 기능보유자들이 전승활동을 하는 작업장의 대표가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제주옹기 전승구도는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형성되어 2011년 재지정 되는 시기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두 시기 적용된 문화재보호법상의 전승원칙이 전통방식의 ‘원형’ 전승이 되다보

15) 2001년 ‘제주도 허벅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 제14호 지정될 당시 전승체계에 대해서는 염미경(2016: 82)을 참조바람.

니 제주옹기의 전승·보존활동에 참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은 제주옹기의 원형 보존에 역점을 두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원형을 체득한 옛 옹기장인들의 지식과 기술전승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옛 옹기장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전문도예가가 소유한 작업장과 도예가 집단이 자연스럽게 전승주도권을 갖게 된 것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지역 옹기들과 마찬가지로 ‘원형’ 전승원칙이 제주옹기에도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옹기의 전승구도가 이 같은 특징을 갖게 된 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경우 과거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장인들이 1970년대를 전후해 전업해버린 상태였으며,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이 본격화된 즈음 전통방식의 옹기제작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이미 작고했거나 고령이 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제주지역개발과정에서 돌가마(石窯)를 비롯한 옹기 관련 유적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IV.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두 개의 해석과 대응

##### 1.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두 개의 해석

2011년 9월 제주옹기 전승체계는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제주도 허벅장’으로 도공장 1인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어 이 기능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에서 ‘제주도 옹기장’이라는 명칭 하에 굴대장, 도공장, 질대장, 불대장이라는 네 개 공정별 기능보유자를 인정하게 되면서 제주옹기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 가장 많은 기능보유자가 있는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다른 지역 옹기 사례들을 볼 때 경기도 오부자옹기와 같이 1인 옹기장 기능보유자를 인정하거나 울산 외고산옹기와 같이 기능보유단체가 지정되어 보유단체 소속 옹기장 전원이 옹기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경우가 있지만, 이들 사례는 보유자 인정인가 아니면 보유단체 인정인가만 다를 뿐 옹기장 기능보유자가 흠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반죽하고 두드리고 패고 깎고 비비고 물레질하고 구워내는 옹기제작 전 과정을 1인의 옹기장이 수제로 하는 전통제작방식의 전 과정을 전승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어떻게 제주옹기제작방식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제주지역에서 옹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주옹기생산은 제작공정별 분업에 의한 공동작업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대부분 옹기일만 하지 않고 농사일과 겸업하였고 공동작업으로 옹기가 제작되었지만 옹기를 성형하는 도공의 일이 가장 어려워 대우가 좋아 한창일 때는 도공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다. 과거 옹기제작에서 도공일을 한 적 있는 도공자들은 옹기성형을 하는 도공이 되려면 가장 쉬운 공정부터 옹기성형까지의 과정을 거치므로 도공의 일이 옹기제작에서 중심이라고 구술했다(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신씨와 옛 옹기장인 박씨와의 심층면접 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10월 2일자).<sup>16)</sup>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의 원형과 관련해, 다른 지역 옹기장들과 같이 옹기장이 전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각 공정별 분업에 의한 공동작업 방식이었는지는 시기별 제주옹기의 존재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제주옹기의 경우 가내수공업 내지 농촌의 부업 형태도 있었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옹기제작공정이 전문화되어 옹기제작을 생업으로 하는 도공들이 증가하였고, 옹기제작공정에서 수입이 가장 좋았던 공정은 옹기를 성형하는 옹기대장과 가마를 축조하고 불 때기를 관장하는 굴대장 일이었다. 과거 제주옹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옹기제작을 본업으로 하게 되었고 옹기만 만드는 장인도 있었으나 농한기 부업으로 옹기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구성원 전체가 옹기에 매달리다보니 도공이 다른 공정까지 겸할 때도 있었다(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신씨와의 심층면접 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8월 16일자; 1대 옹기장인 박씨, 고씨1, 고씨2와의 심층면접 결과, 박씨와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13일자, 고씨1과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16일자, 고씨2와의 면접일자는 2015년 8월 2일자).

이는 제주옹기생산 자체의 특성과 관련되는데, 제주옹기는 처음에는 자가수요 혹은 마을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해 생산하다가 지역민 모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업의 영역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따라서 초기 자가 혹은 마을공동체의 수요에 부응해 가내수공업 형태가 지배적인 제작방식에서 지역민 모두의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공업의 영역으로 발전해 대량생산을 위해 협업형태가 보편화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지역마다, 시기별로 달랐는데, 이에 대해 기능보유자를 비롯한 옛 옹기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의 단순화를 고려하고 있어 2015년 제주옹기 전수장학생 선발부터는 2011년 재지정 이후 적용된 제작공정별로 선발하지 않았고 다기능 전수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이다(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과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11월 21일자).

제주옹기 제작이 조수2리를 제외하고 대정읍 옹기생산지들에서 1960년대 말 또는 1970년 초에 중단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제주옹기 제작방식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제주옹기 생산은 기본적으로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기물을 성형하는 대장(도공), 토립<sup>17)</sup>(토래미)을 만들고 기물을 관리하는 질대장, 가마에서 기물을 소성하는 불대장, 가마축조를 맡는 굴대장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옛 옹기장인들과의 심층면접내용에 의하면, 제주옹기 제작이 꼭 분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가정에서 자가 수요를 위해 옹기를 한 굴(가마) 또는 두 굴을 구워내는 경우 가족구성원들이 땀감과 흙 모으는 일, 옹기를 성형하는 도공의 일, 토립을 하고 옹기를 관리하는 질대장의 일, 옹기를 소성하는 일 등을 모두 하는데, 옹기를 성형하는 도공의 일은 하기 힘들어 외부에서 전문 도공장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도공의 일은 쉽게 하기 힘든 일이라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옹기의 환금성이 커지면서 현금이 있어야 도공장을 데려올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에 도공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제주에서 옹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성형 전문 도공장이 등장했으며, 도공장 개인이 옹기제작 전 과정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1950년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제주지역에서 옹기수요가 많아졌으며, 따라서 자가 수요를 위한 생산을 넘어서 제주 전역에 보급하기 위한 대량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옹기제작이 분업화·전문화되고,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옹기제작에서 협업체제가 보편화되게 된다(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신씨와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8월 16일자; 1대 옹기장인 박씨, 고씨1, 강씨와의 심층면접결과, 박씨와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13일자, 고씨1과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6일자, 강씨와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20일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은 자가 수요가 지배적이던 시기와 수요급증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다량 제작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발전하면서 제작과정에 변화를 가져왔고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제주옹기 생산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진데다가 명맥이 거의 끊겨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1970년대 전후 전업해버린 고령의 옛 옹기장인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제주옹기 복원 및 보존과 전승을 주도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전문 도예가들이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전통가마와

17) 전통옹기 성형기술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릇의 벽을 쌓는 토립(토래미) 혹은 타림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그릇의 벽을 만들기 위해 떡가래 혹은 질판 모양으로 길게 흠막대기를 만들어 그릇 벽의 형태로 한단씩 테쌓기하거나 코일처럼 감아올리는 서리기 방법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1)을 참조 바람.

옹기를 복원하려는 초창기 활동에는 관여하였으나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부터는 전승주도권은 1990년대부터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전통가마와 옹기 복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현장 기반의 전문 도예가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는 또한 당시 문화재보호법에서 전통제작방식 원형대로의 전승해야 한다는 원형 보존이라는 전승원리가 적용되었던 점도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승주도집단이 두 전통제작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는 전승주도집단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의와 그 상황에 보다 힘을 실을 수 있는가 하는 전문주도집단의 판단과 이해가 작용하였는데, 전승주도집단이 두 해석 중 어느 해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전승집단의 범위는 물론 구사할 수 있는 전략들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옹기장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무형문화재 지정이 해제되고 2011년 재지정을 목표로 하던 시기에 전승주도집단이 선택한 전통 옹기제작에 대한 해석은 달랐다. 이에 따라 이 두 시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승집단 범위도 달라졌다. 그 결과 제주도 옹기장 전승 체계가 변화되게 된다. 다음에서는 이 두 시기를 중심으로 전승주도집단이 특정 전통제작방식을 선택하면서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전통제작방식 해석과 전승주도집단의 대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지정 해제를 거쳐 2011년 재지정된 당시에 기능보유자 인정에 적용된 전통제작방식은 서로 다르다. 두 시기 모두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보존이 전승원리로 적용되었지만 전통제작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선택되었다. 2008년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된 이후 전승활동을 주도해온 작업장 대표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상 무형문화재 지정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제작방식을 체득하고 있는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조직하고 자신의 작업장을 전승활동 거점으로 하여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옹기를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 문화전략이 동원되었으며,<sup>18)</sup> 제주옹기는 옹기를 성형하는 도공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옹기제작공정별

1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6)을 참조바람.

로 분업에 의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방식이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의 원형이었다는 해석을 내세워 전승집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들까지 전승집단에 포함시켜 연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것은 2011년 제주옹기가 제주도 옹기장이라는 명칭으로 무형문화재로 재지정 시 수용되어 제주옹기제작 공정별로 4인의 보유자를 가진 전승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제주옹기 전승·보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제주도예원’의 전승주도권은 상실하였고, 과거 ‘제주도예원’에서 나온 전수자들이 설립한 작업장인 ‘K’와 옛 옹기장인들이 참여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해 제주옹기 전승활동을 전개해나가게 된다. 여전히 제주옹기 전승의 기본원리가 원형 보존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2001년 당시의 ‘제주도예원’과 같은 형태로 옛 옹기장인들이 참여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조직해 전면에 내세우고 옛 옹기장인들과 함께 전통가마를 과거 옹기생산지였던 대정읍 신평리에 복원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제주옹기를 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이들 전승주도집단은 1990년대부터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의 전승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전수자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이들은 전승집단 범위를 과거 옹기생산지였던 대정읍 구억리와 신평리 마을주민들까지 확대시켜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주민, 나아가 지역민 전체가 함께하는 문화전략까지 구사하였는데, 이의 일환으로 제주옹기박물관을 건립하고 옹기를 지역축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까지를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제주옹기의 집산지였던 대정읍 구억리 마을청년회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주축이 되어 2009년 3월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폐교된 구억분교 건물에 옹기체험장으로서 ‘제주옹기 배움터’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구억리 마을주민들이 소장한 제주옹기 관련 유물과 채록 결과물을 모아 2010년 11월 제주옹기박물관<sup>19)</sup>이 건

19) 이 박물관에서는 옹기와 관련한 산증인들의 사진과 이력이 전시되었고, 150여 종 700여 점의 옹기가 수집되었으며 이 가운데 50여 종 150여 점을 전시했으며, 옹기복원노력을 해온 허씨2가 관장을 맡았다. 그러나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작업장이 대정읍 신평리에서 무릉2리로 옮겨가면서 구억리 소재 옛 구억분교 건물에 있던 제주옹기박물관도 문을 닫게 된다. 이 박물관은 현재까지 ‘K작업장’ 대표이자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대표인 허씨2가 관장으로 되어있지만 2018년 현재도 재개관을 못하고 있다. 대정읍 무릉2리에 거주하던 2011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가 작고하면서 자신의 집터 부지를 ‘K작업장’ 대표에게 제주옹기 전승·보존에 사용해달라고 회사했으나, 작고한 기능보유자의 가족과 소유권분쟁 중이다(대정읍 무릉리 마을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 2016년 10월 31일자).



립되었고, 구역리 마을과 협력하여 제주옹기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지역축제로서 ‘제주옹기축제’라는 이름으로 옹기축제가 열린다. 이러한 문화적 대응을 하면서 제주옹기제작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라는 또 다른 해석을 제기하면서 2001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방식이 이를 간과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이 해석을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위원회가 수용하면서 제주옹기 전승체계는 2011년 9월 ‘제주도 허벅장’ 1인 전승체계이던 것에서 제주도 옹기장이라는 명칭 하에 굴대장, 도공장, 질대장, 불대장이라는 네 개 공정별 기능보유자를 지정함으로써 제주옹기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 가장 많은 기능보유자가 있는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전통옹기 제작이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고 다수의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가 갖춰지면서 이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 2011년 제1회 ‘제주옹기축제’<sup>20)</sup>이다. 이 축제는 제주옹기박물관을 개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를 한 대정을 구역리에서 개최되었다.<sup>21)</sup> 이렇게 하여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와 이를 주도한 ‘K작업장’의 전수생집단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포함해 전수교육조교의 위치를 가진 옛 옹기장인들과 2대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을 보유하면서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2001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지정 해제를 거쳐 2011년 재지정 받은 당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에 적용된 전통제작방식은 달랐다. 두 시기 모두 전통방식대로 전승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원리가 적용되었지만 전승주도집단의 현실 정의에는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경합하였

20) 제주옹기의 전통제작방식이 분업에 의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1년 처음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활용한 ‘제주굴제’라는 고유명사를 다시 끌어와 제주옹기 전승이 기능 전승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문화 전승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위치 지움으로써 전승집단의 범위와 전승활동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염미경, 2016).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렇게 하여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와 2011년 재지정 받은 시기의 제주옹기 전승체계는 기능보유자의 인정 범위가 달라져 제주지역 무형문화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을 둔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21) 옹기축제를 통해 제주옹기가 지역 문화자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염미경(2016: 90-93)을 참조바람. 201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재지정 받은 이후 전승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고 현재 이들 간 교류는 구역리 마을 출신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통해 교류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폐교된 구역리 소재 구역분교 건물에 제주옹기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구역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전통옹기들을 모두 기증했는데, 그것들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대정을 구역리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는 2016년 11월 21일자). 현재 ‘K작업장’과 제주옹기박물관 대표로 되어 있는 허씨2와 마을 간 관계는 깨진 상태이다.

고 이 둘 중 당시 전승집단의 목표 달성에 유리한 전통방식에 대한 해석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제주옹기생산은 자가 수요가 지배적이던 시기에서 수요급증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다량 제작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발전하면서 제작과정에 변화를 가져왔고,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제주옹기 생산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진데다가 명맥이 끊겨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1970년대 전후 전업해버린 고령의 옛 옹기장인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상황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전통제작방식대로라는 원형 전승원리가 적용되면서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을 1990년대부터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자신의 작업장을 중심으로 전통가마와 옹기 복원노력을 해왔던 전문도예가집단이 갖게 되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한 전승주도집단의 대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이들이 선택한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이다. 즉 2001년 옹기장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무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후 2011년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한 전승활동 작업장과 옛 옹기장인, 그리고 과거 옹기생산지 주민들은 전통옹기제작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 다른 선택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응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001년과 2011년 두 시기에 전승주도집단이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특정 해석을 선택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에 따른 것이지만 여기에는 전승주도집단 대표의 목표와 이해가 작용하였다. 그리고 2001년과 2011년 두 시기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승주도집단이 사용한 전략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원형 보존 중심의 전승원리가 지배했다고 할지라도 지정방식과 전승체계 변화는 해당 자원을 둘러싼 주요 집단들의 전략 구사방식과 연대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 V.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호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 즉 보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법’에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기능보유자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보유자 인정과 전승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1962년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문화재에 적용된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 이 전승원리가 무형문화재에 적용되면서 전승구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제도라는 구조적 여건 하에서 전승집단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제도의 전승원리가 무형문화재로서 제주옹기의 전승구도를 기본적으로 구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승행위자들은 그 속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위치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그 현실에 힘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며 선택된 전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01년 제주옹기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11년 재지정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달랐다. 전승주도집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끌어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를 견지하였으나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들의 이해나 목표 달성에 유리한 해석을 선택하였고, 이것은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던 시기와는 다른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전승에서 원형 보존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었을지라도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주도집단의 목표와 이해, 그리고 대응전략이 전승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제주옹기 전승구도와 전승방식은 제주옹기 전승행위자들 간의 정치과정에 따라 변화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승구도 형성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달려 있지만 제주옹기 전승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대응전략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001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지정 해제를 거쳐 2011년 재지정된 당시 모두 문화재보호법의 전통방식대로 전승한다는 원형 보존 원칙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경합하고 둘 중 전승주도집단이 당시 목표 달성에 유리한 전통방식에 대한 해석이 선택될 수 있었던 데는, 처음에는 자가 수요를 위해 옹기생산을 하다가 수요가 급증해 판매 목적으로 옹기를 다량 제작하게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를 띠게 되는 등 옹기제작과정에 변화가 있었던 점과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옹기가 제주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된 데다가 옹기생산지들이 환금작물경제로 편입되면서 옹기생산의 명맥이 거의 끊겨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 이로 인해 1970년대 전후 환금작물 분야로 전업해버린 고령의 옛 옹기장인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제주옹기가 처한 현실 여건이 함께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전통제작방식대로라는 ‘원형’ 전승원리가 적용되면서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을 1990년대부터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자신의 작업장을 중심으로 전통가마와 옹기 복원노력을 해오던 전문 도예가들이 갖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제주옹기 전승구도는 다른 지역 옹기들처럼 옹기장 기능보유자들이 전승주도권을 갖고 전승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내에 있으면서 작업장을 갖고 있는 전문도예가가 자신의 작업장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등 제주옹기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작업장으로 활용하면서 제주옹기 전승활동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구조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전통옹기제작과정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이라는 전승주도집단이 선택한 해석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면서 제작공정별로 기능보유자가 인정된 체제 하에서는 기능보유자 개인이 옹기 제작 전 과정을 전승하기 어려워 이를 총괄하는 전승주도집단, 특히 작업장 대표의 권력은 예전보다 훨씬 커진 상태이다. 따라서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는 작업장 대표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장 대표의 권력화의 문제, 그리고 전승활동의 사유화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기능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이재필, 2011: 18)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옹기장 기술을 둘러싼 숙련 주체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와 숙련 기능의 전수 및 보존 체계와 법·제도의 변화, 기능 보유자들의 제도 인식과 이해관계의 전략적 해석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가 전통기술과 문화, 숙련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이 논문은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전통 숙련의 사회학적 의미를 분석한 미시 사회학적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서 무형문화재에 종전의 ‘원형’ 개념 대신에 ‘전형’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제작방식의 전승원리가 적용되면서 전승집단구조에서 주변화되었던 ‘제주옹기문화연구회’ 내부에서는 지역 고유 전통문화 보존과 새로움을 창신(創新)할 수 있는 학술단체로서의 위상을 키우고 지역의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와 ‘제주옹기굴제’, 그 외 한국도자학회 등 문화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오창윤, 2016: 58-59). 이들 간의 관계 양상도 향후 제주옹기 전승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를 맥락으로 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숙련 보존과 관련된 제도가 어떤 제도적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도변화의 동학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의 문화재보호 관련 법·제도가 일본의 것과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윤지. 2016.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학과 언어』 38(3): 201-226.
- Kim, Yun-Ji. 2016. “Rediscovery of and Issue Finding about, the Value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for it to be List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s.”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8(3): 201-226.
- 김창민. 1995.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집문당.
- Kim, Chang-Min. 1995. *Cash Crop and Peasant Culture*, Jeju, Korea: Jimmundang.
- 류재만. 2010. “옹기 이해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6(2): 45-62.
- Ryu, Jae-Man. 2010. “A Study on the Instructional Plans to Promote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Ongg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eramic* 6(2): 45-62.
- 배영동. 2014. “수제(手製) 전통의 산업적 성격 전환 과정: 울산 외고산마을 옹기의 사례.” 『한국민속학』 59: 31-64.
- Bae, Young-Dong. 2014. “The Transition of the Tradition of Handmade Potteries into Industrialization: the Case of Oegosan Onggi Village in Ulsan, Korea.” *The Korean Folk* 59: 31-64.
- 손태도. 2015. “문화재보호법 운영과정에서의 쟁점들과 그 논의.” 『한국전통공연예술학』 4: 161-191.
- Son, Tae-Do. 2015.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Operation in the Process of Law Issues and the Discussion.”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4: 161-191.

- 송준. 2008.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의 보존(保存)과 활용(活用)에 대한 소고(小考) - 전형(典型)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7: 217-241.
- Song, Jun. 2008. “A Study 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ing on a Concept of a Pattern(典型).” *Namdo Folk* 17: 217-241.
- 염미경. 2001. “기업권력, 도시활성화 그리고 도시정치: 일본 철강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회』 35(1): 175-205.
- Yeum, Mi-Gyeong. 2001. “Company Power, Regional Revitalization, and Urban Politics: A Case Study of Japanese Steel Tow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5(1): 175-205.
- \_\_\_\_\_. 2011. “제주옹기의 문화유산 만들기 과정과 이해갈등.” 『지역사회학』 12(2): 265-293.
- \_\_\_\_\_. 2011. “A Cultural Heritage Making of Jeju Onggi as an Interest Conflictual Process.” *Korean Regional Sociology* 12(3): 265-293.
- \_\_\_\_\_. 2016. “제주옹기의 전승체계 변화와 지역 문화자원화과정.” 『지역사회학』 17(3): 67-102.
- \_\_\_\_\_. 2016. “The Changing Transmission System of Jeju Onggi and the Process of Making it a Cultural Resource.” *Korean Regional Sociology* 17(3): 67-102.
- 오창윤. 2013. “제주옹기의 숙성실험과 옹기개발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4(1): 299-307.
- Oh, Chang-Yoon. 2013. “The Research of Fermenting Experiment of Jeju Onggi and the Container Development.”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4(1): 299-307.
- \_\_\_\_\_. 2016. “제주옹기문화연구회의 변천과 발전방안.” 『한국도자학연구』 13(2): 43-60.
- \_\_\_\_\_. 2016. “A Study on Transition and Development of Jeju Onggi Culture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mselves hangukto* 13(2): 43-60.
- 윤남윤. 2011. “옹기장의 정체성 변화에 따른 가업계승에 관한 연구: 울산시 옹기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Yoon, Nam-Ryoon. 2011. “The Change of Onggi Makers' Identity and the Succession of Their Family Business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이영자. 2006. “옹기의 기능과 문화적 가치” 『2009 울산옹기엑스포 개최를 위한 옹기가치의 현대적 재창조와 활성화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 31-41.

- Lee, Young-Ja. 2006. "Function and Cultural Value of Onggi." pp. 31-41 in 2009 *Contemporary Re-creation and Activation Symposium of Onggi Value for Ulsan Onggi Expo*. Korea Culture and Tourism Policy Institute.
- 이은진. 2000. "성장연합이나 후견인 정치인가? 개별화된 개발이익과 지역정치." 『사회연구』 13: 69-96.
- Lee, Eun-Jin. 2000. "Growth Alliance or Guardians for Politics? Gains and Individualized Local Politics." *Social Research* 13: 69-96.
- 이재열. 1996. 『경제의 사회학: 미시-거시 연계분석의 이론과 방법』. 나남출판.
- Yee, Jae-Yeol. 1996. *Economic Sociology: Theory and Method of Micro-Macro Link*. Nanam publisher.
- 이재필. 2011. "무형문화재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관한 검토" 『문화재』 44(4): 18-41.
- Lee, Jae-Phil. 2011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chievement of ICH Safeguarding System." *MUN HWA JAE-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44(4): 18-41.
- 이창언. 2009. "경상북도 지역 옹기점의 분포와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117-149.
- Lee, Chang-Un. 2008. "Spatial Distribution and its Change of Pottery-making Sites in Gyeongsangbuk-do Area." *Local History and Culture* 12(1): 117-149.
- 이채원. 2011. "지방자치단체가 무형유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 44(4): 4-17.
- Lee, Chae-Won. 2011. "A Case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Local Government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unity-Focused on Oegosan Onggi Village-." *MUN HWA JAE-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44(4): 4-17.
- 이한승. 2015. "옹기제작에 나타나는 전승지식의 양상: 경기도 '오부자옹기'를 중심으로" 『민속연구』 31: 299-333.
- Lee, Han-Seung. 2015. "An Aspect of Transmitting Knowledge Concerning Onggi (Korean Earthenware) Production-in Case of Obuja Onggi Workshop of Gyeonggi Province." *Folk Research* 31: 299-333.
- 이홍. 2013. "환경결정론과 전략적 선택론에 대한 논의 재 접화: 한국의 아이돌 음악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인사조직연구』 21(4): 219-244.
- Lee, Hong. 2013. "A Revisit to Discussions on Environmental Determinism vs. Strategic Choice: Centered on the Case of Korean Idol Music Industr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1(4): 219-244.
- 정수진. 2012. "무형문화재의 향방: 한일 양국의 제도 비교로부터." 『동아연구』 62: 265-297.

- Jung, Soo-Jin. 2012. "Comparative Study on Institution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Korea and Japan: Focused on the Japanese Institution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East Asian Studies* 62: 265-297.
- 정용하. 2017. "한국 제20대 총선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민족문화』 82(2): 333-374.
- Chung, Yong-Ha. 2017. "The New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ology* 62: 333-374.
- 제주옹기문화연구회. 2011. 『제주옹기 어제 오늘 그리고...』. 제주옹기문화연구회.
- Jeju Onggi Culture Research Institute. 2011. *Jeju Onggi: Yesterday, Today, and...: Jeju Onggi Culture Research Institute.*
- 조승현. 2004. "광주 전남지역 재래공업의 지리학적 연구." 성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Jo, Seung-Heoyn, 2004. "The Location and the Change Process of the Handicraft Industry of the Agricultural Area in Gwangju and Chonnam Provinc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하연섭. 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4): 339-359.
- Ha, Yeon-Seob. 2002. "Recent Trends in New Institutionalism: Theoretical Innovations and Convergenc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4): 339-359.
- 홍태한·김태호. 2017. "사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 『남도민속연구』 34: 283-314.
- Hong, Tea-han and Tae-ho Kim. 2017. "Presenting Issues Associated with the Design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Namdo Folk* 34: 283-314.
- Castells, Manuel. 1977. "Theoretical Tools for the Study of Urban Politics." pp.243-245 in *The Urban Question*. London: Anord.
- Child, John. 1972. "Organizational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Sociology* 6: 1-22.
- \_\_\_\_\_. 1985. "Managerial Strategies, New Technology and the Labor Process." pp.107-141 in *Job Redesign*, edited by David Knight et al. Hampshire: Gower.
- Ferman, Barbara. 1996. *Challenging the Growth Machine: Neighborhood Politics in Chicago and Pittsburgh*.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Miles, Raymond. E. and Charles C. Snow. 1978. *Organization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Ortner, Sherry B.. 1984. "Theory in Anthropology since the Sixtie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6(1): 126-166.



- Porter, Michael E.. 1980.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Free Press.
- Reed, Michael I. 1988. "The Problem of Human Agency in Organizational Analysis." *Organization Studies* 9: 33-46.
- Roseberry, William. 1989. *Anthropologies and Histories: Essays in Culture, History and Political Economy*. New Brunswick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 Whitley, Richard. 1988. "Taking Firm Seriously as Economic Actors: Towards a Sociology of Firm Behaviour." *Organization Studies* 8: 125-148.

염미경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에 재직 중이며, 도시/지역사회학, 산업사회학, 문화사회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외 이주 연구를 하고 있다.

(2018. 1. 9 접수; 2018. 2. 1 수정; 2018. 2. 5 게재확정)



## **Changes in Structure of Cultural Transmission of Jeju Onggi and Its Response: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Way and the Transmission Principle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Mi-Gyeong Yeum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s of the transmission principle of the existing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since 1962 and its impact on the structure of transmission of the intangible heritage, when the principle is employed, designating the intangible heritage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ase of 'Jeju Onggijang', which was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Jeju in 2001 and has been reassigned in 2011, after its release of the title for few years, is where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is applied in realistic sense. This makes a fine example for the process of selecting a specific part and giving new meaning to it. In particular, we paid attention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esignated strategies of the firs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2001 and the strategies of the traditional power-driven groups shown in the reassigned times in 2011. For the detailed analysis, the literatures and the in-depth interviews from expert groups such as former onggi artisans and former aquatic group, local government cultural property administrative authorities, other local observations were use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Despite the fact that both of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had preserved the traditional production method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production method' by the tradition group from each of the two different periods was different. This can be seen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changed the tradition system, of which a part such as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hold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Jeju. Next, what Jeju Onggijang's structure of transmission features is that it is not a general form with the possessor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t the apex of a triangle, but rather a representative from the workplace of the transmission system as the peak, so that the artisan and the apprentices are positioned hierarchically. This is related to the realistic conditions that the production of onggi has been stoppe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cash crop economy such as tangerine farming in the 1960s and 1970s was introduced into the production area of the pottery. Based on this reality, 'Jeju Onggijang' transmission structure seems to continue for a while, and in the future, would be influenced by the practical position, interests, and the ways of counter strategies of the tradition-transmission groups.

Key word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riginal form', 'Jeju Onggijang', Jeju Onggi, transmission structure, Jeju